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의 추진 방향

지난 5월 16일, 본 연합회가 주최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열악한 복지 현실을 환기시키며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와 청중들은,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근방식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앞으로의 제정 작업의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합회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정 방향을 모색·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운동을 더욱 힘있고 내실있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간 성과와 앞으로의 제정 운동 전개 방향을 이번 『월간 한농연』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농어촌복지특별법』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농어촌복지특별법』의 포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범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특히 대상과 시행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 특별법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이다. 이는 곧 대상을 “농촌”으로 할 것인가. “농어민”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상은 농어민, 목적은 농어민의 기본적 사회보장과 농어촌의 복지기반시설 확충이라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과제는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해야 할 것인가이다. “농어촌 복지”라 함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포함한 의료·교육 등”을 말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농어촌 복지의 개념마저 지나치게 외연



◀ 지난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농연 중앙연합회가 개최한 「농어촌에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장면.

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에 제한하여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이 외의 부분은 별도 입법 또는 현존 법령의 강화로 나가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번째로, 시행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농어촌에 복지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헌법 및 농업·농촌기본법 상 선언적의미로 명시화 되어있거나, 부분적으로 흩어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기간이나 시행주체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내용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빠른 사회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민단체가 참가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정책이 입안·추진되고 공정한 정책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집행기구 구성

『농어촌복지특별법』의 각종 조항들을 집행할 주체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간, 실행주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심의·평가를 할 수 있는 정책 조정 주체의 확립도 요구된다.

그간 한농연은 가칭 “농어촌복지공단”을 설립하여, 농어촌 주민(농어업인)에 관련된 각종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 부처 내에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의 토론회에서도 비중있게 제기되었다.

“농어촌복지공단”을 집행 주체로 상정할 경우, 농어촌 복지에 관련된 전반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 등의 어려움이 매우 커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정부 부처 내에 새로운 전담기구(예 : 농림부 내 농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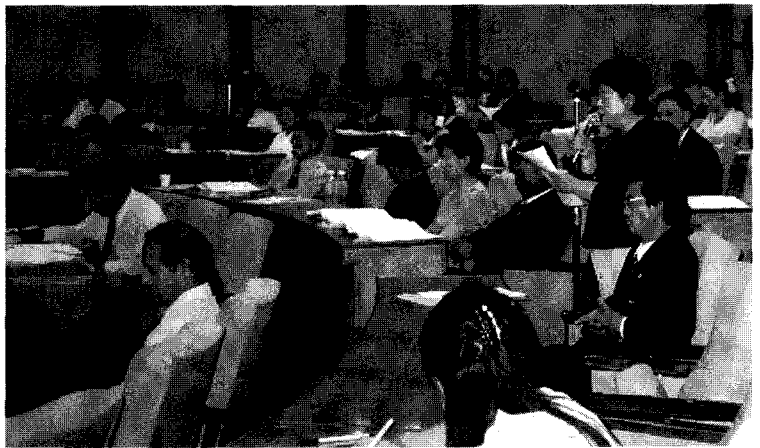
지 전담부서 설치)를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어업인들에 대한 행정적 소외가 일어날 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등 여타 정부부처 내에 유사 부서를 두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며, 농어촌 복지 정책의 통합적인 수립·집행·평가에 있어 맹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집행기구 설치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 방안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농어촌특별세를 존속시키면서 복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농어촌 복지 관련 별도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법률 조항에 농어민 또는 농어촌복지를 위한 보조, 융자, 투자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특세 지원금을 통해 농어촌국민연금의 보조금으로 쓰지 않고, 공단 운영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볼 때 더욱 절실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게 농어촌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 기구의 설립·운영도 필요하다.

###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한농연은 이번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조속한



▲ 지난 5월 16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농촌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농어촌복지 특별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제정·시행을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200인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농업계 내외부의 주요 인사들을 위촉하여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였다. 이후, 의원 입법이나 청원 입법 등 가능한 절차를 밟아 나가 연내에 반드시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 등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면밀히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2만 한농연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이다.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농권보호 운동과, 한국 농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중심된 역할이 필요하다. 400만 우리 농업인의 대표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내에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겠다.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운동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농연**